

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통보서

(정기)

장 기 요 양 기 관 명	벤엘요양원	장 기 요 양 기 관 기 호	12914000015
급 여 종 류	노인요양시설(개정법)	대 표 자	김성윤
평 가 년 도	2025	평 가 등 급	정기평가 A(최우수)

구 분	총 점	기관운영	수급자존중	서비스제공	서비스결과	가점
평가점수 (배점)	100.00	28.00	24.00	25.00	23.00	
점 수	95.15	26.95	23.00	23.20	22.00	
전체평균	85.97	24.30	20.39	20.59	20.30	
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의해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.
- 가산지급일까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급이 조정될 수 있으며, 가산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.

※ 수시평가 실시기관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음
※ 별도가점 : 재가급여 평가 기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정책참여도
(가점) 지표로 평가 점수에 합산됨

- ※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
-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 - ※ 제 출 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요양기획실 요양법규부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(운영센터), 지역본부
 - ※ 제출방법 : ① 방문, 우편, 팩스(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별지 제32호 서식)
② 인터넷(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/개인서비스/심사청구)

-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경우,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,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2026년 3월 4일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

본

